



거 소 투 표 신 고 서

이 신고서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·시·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.

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2. 2. 12.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 소 (주민등록지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세 대 주 명	
거 소 (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)	우편번호 (구·시·군) (읍·면) (대로·로·길)	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	
성 명	생년월일	성 별	남·여

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○표를 하고, 1·2·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거소투표 신고사유	확 인 자	확 인 란
1.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	부대장· 경찰관서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_____ (인)
2. 병원·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	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 교도소·구치소의 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_____ (인)
3.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	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	• 장의 직명(성명) _____ (인)
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	해당없음	해당없음
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(해당 지역 없음)	해당없음	해당없음

본인은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_____ (인)

_____ 구·시·군의 장 귀하

주: 1.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.

2. "거소"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,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, ③병원·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·교도소·구치소에 수용·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·시설명을,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(세입자는 "○○○댁"까지) 자세히 적어야 하며, "전화번호"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
3.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·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(職印)을 찍거나,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·리·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4.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.

5.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습니다.

6.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폴 칠 하는 곳

(접 는 선)

(보내는 사람)

우 편 요 금
수취인후납부담

우편번호

(받는 사람)

시 · 구 · 읍 · 면 · 장
도 · 시 · 군 · 동 귀하

등 기 취 급

거소투표신고서 재중

우편번호

※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2. 2. 12.)까지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접 는 선)

(접 는 선)